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시행세칙

제 정 2006. 11. 9
개 정(1) 2009. 10. 13
개 정(2) 2011. 9. 27
개 정(3) 2014. 5. 30
개 정(4) 2015. 7. 6
개 정(5) 2016. 9. 28
개 정(6) 2018. 3. 9
개 정(7) 2019. 3. 26
개 정(8) 2020. 4. 21
개 정(9) 2020. 9. 29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「리스크관리규정」 제7조에 의거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고 한다)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- ①위원장은 투자관리부문장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 부재시에는 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리할 수 있다.
- ②대체자산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위탁자산운용규정 상의 대체자산과 관련된 투자실무위원회 위원
 - 2. 운용지원 및 성과분석 담당부서장
- ③전통자산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위탁자산운용규정 상의 전통자산과 관련된 투자실무위원회 위원
- 2. 운용지원 및 성과분석 담당부서장
- ④본 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안건과 관련한 위원회는 본 조의 제 2항 및 제3항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⑤위원회 간사는 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으로 한다.
- ⑥위원장은 본 조의 제2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 개최시 관련 임직원을 추가로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, 위원회에는 안건 관련부서의 임직원이 배석할 수 있다.
- ⑦투자운용부문장 및 준법감시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- 제3조(역할)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 -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진행 및 제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위원장 및 위원은 부의안건을 심의한다.
 -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소집, 안건취합 등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다.
 - ④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위원회 관련 기록, 서류작성 등 보조업무를 담당한다.
- 제4조(소집) ①위원장(위원장 부재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대리인)은 필요시 혹은 각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 3일전까지 심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된다.
- 제5조(심의사항)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리스크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
 - 2. 「리스크관리가이드라인」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- 3. 대체직접투자 등 중요 안건에 관한 사항
 - 4. 「리스크관리가이드라인」, 다른 규정 및 세칙에서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명시된 사항
 - 5. 기타 위원장 및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사항이거나 심의가 필요하다고 리스크 관리담당부서에서 인정한 사항
 - ②보고 및 부의사항에 대한 심의는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긴급처리가 필요하거나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 하에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위원의 협조를 받아서 선처리 후, 사후심의 및 보고 할 수 있다.
- 제6조(회의록) ①위원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한다.
 - ②회의록에는 의사관련 경과사항 등을 기재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여 보관한다. 다만, 단순 보고사항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.
- 제7조(회의결과의 보고 및 처리) ①위원회 회의결과는 각 위원의 서명 후 위원장 및 사장에게 보고한다.
 - ②위원회 회의결과의 조치사항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.
 - ③대체직접투자 등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투자위원회에 심의결과를 보고한다.

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0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09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1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4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1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5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6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7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8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9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